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즈음하여



세무사이종영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소득세란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란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실정법상 세금을 말하는데 종합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이자·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축산업¹⁾을 영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농가의 일정 규모 이하는 농가 부업적 소득²⁾으로 과세하지 아니(비과세)하고 있다.

비과세되는 농가의 부업에 해당하는 축산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가축 별	규 모	비 고
젖소 (95.12.30 개정)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0,000마리	
오리	10,000마리	

농업(작물재배업)의 경우 소득세로 농지세가 과세되므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복되므로 소규모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지 아니하였다.

소득세는 매년도 소득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신고할 소득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2. 신고할 때 유의사항은

축산업 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종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수입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세법이 별도로 정하며 기업회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함)으로 각 년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비(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금액을 산출할 근거가 없다면 추계과세(인정과세)를 받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되는 기장의무자인 경우 추가로 장부비치 불성실 및 무 납부 등 가산세가 부과되는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장의무자인 경우 약 30%정도가 가산세로 할증되게 된다. 나아가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은행 금리기준 10.8%(월3/10,000)의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그러면 소득세의 계산구조와 부담은

가. 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소득에서 전년도 이월된 결손금(비용초과분)과 특별히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소득을 산출한 다음 가족공제 등 인적사항에 따른 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 표준액(세금 산출의 기준액)을 산출하여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부담할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가족공제로 공제할 금액은 기본공제로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으로 하되 존속 및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는 남자 60세(여자 55세)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추가공제로 6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양육비 100만원, 부녀자 1인당 50만원, 장애인 1인당

1)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며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해체·냉동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의 3

4) 소득세법 제55조

5) 소득세법 제77조

종합소득과세 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00만원,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경우 인당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공제대상이 없으면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대상 가족이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한다.³⁾

세율구조⁴⁾는 다음과 같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저소득에는 저율 고소득에는 고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세금은

산출된 과세표준을 소득별로 종합하여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산출하여 감면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부담할 총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자, 배당, 기타, 근로소득 등)과 중간 예납된 세액 및 수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5/31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금액과 1/2중에서 적은 금액을 45일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

4.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관례상 세무서에서 신고를 안내를 하여 왔다. 그러나 신고안내는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 자신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한 행정적 권장에 불과하다.

현행 납세제도는 대부분 신고납세제도를 취하며 신고납세가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성실한 신고를 보장하기 위한 기장의무 제도를 두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등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소득이 많은 경우(최고 8,000만원 초과) 소득세율이 35%에 달하고 이에 10%를 주민세로 부과하게 되므로 결국 합하여 38.5%를 부담하게 되는데 무신고시 가산세를 더하면 50%를 초과하는 부담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세무조사의 활동이 강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소득세 부담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